

사단법인 대한골프협회 정관

1966년 5월 30일 허가
 (문-예체 1732-1)
 1967년 10월 2일 개정
 1970년 5월 1일 개정
 1973년 2월 14일 개정
 1974년 2월 18일 개정
 1975년 9월 11일 개정
 1977년 7월 7일 개정
 1980년 10월 7일 개정
 1984년 4월 26일 개정
 1985년 6월 13일 개정
 1986년 7월 19일 개정
 1988년 2월 19일 개정
 1995년 2월 18일 개정
 2002년 3월 9일 개정
 2005년 3월 15일 개정
 2006년 3월 2일 개정
 2009년 10월 6일 개정
 2011년 5월 19일 개정
 2012년 3월 16일 개정
 2014년 6월 16일 개정
 2015년 2월 24일 개정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설립근거) ① 본 협회는 사단법인 대한골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GOLF ASSOCIATION(약칭 KGA)이라 한다.

② 본 정관은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정관 제5조 및 제9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체육회의 정가맹단체인 ‘사단법인 대한골프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소재지) 본 협회의 소재지는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74에 둔다.

제3조(목적 및 지위) ① 협회는 골프 운동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체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량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협회는 골프 종목을 소관하는 국제경기연맹 등 국제체육기구에 대한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골프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제4조(사업) ①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국내 및 국제경기,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의 개최 및 참가
2. 경기 제 규칙의 제정
3. 골프장의 공인 코스레이팅 산정 및 부여
4. 핸디캡제도 제정 및 공인 핸디캡 발급
5. 골프 기술연구와 경기자의 발굴 육성

사단법인 대한골프협회

- 6. 전국규모 골프연맹 및 시·도 골프협회의 지원 육성
 - 7. 출판사업
 - 8. 경기에 관한 자문 및 건의
 - 9. 경기자 및 경기위원, 운영요원 등의 양성
 - 10. 경기시설에 관한 연구와 설치 및 관리
 - 11. 경기에 관한 자료모집 및 조사통계
 - 12. 골프종목에 관한 홍보
 - 13. 본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타 수익 사업
-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수익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본 협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본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 학교, 근무처,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 원

- 제6조(회원)** 회원은 본 협회에 가입이 승인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9홀 이상 골프코스의 회원으로 구성된 골프장. 다만, 골프장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는 당해 골프코스를 관리 운영하는 자
 - ② 시·도 골프협회의 장
 - ③ 전국규모의 각급 골프연맹체의 장
 - ④ 기타 유관단체의 장
- 제7조(가입절차)** 본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골프장 및 단체는 소정의 서류를 첨부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1. 회원총회와 대의원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 2. 본 협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 3. 본 협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본 협회의 회원은 회원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본 협회의 정관, 제반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원의 탈퇴)** 본 협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및 징계)** ① 본 협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골프계에 공적이 있는 회원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리가 있는 회원단체 및 개인은 징계할 수 있다.
- ②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장 임 원

-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5인 이내의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14인 이상 27인 이내
 - 3. 감사 2인
-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1. 회장의 임기 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부회장의 임기 제한 기간 산정에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나,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 3. 이사 및 감사의 제한 기간 산정에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회 임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호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임원 임기의 예외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임원 선출 총회 전에 미리 체육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1.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
 - 2.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기여가 명확한 경우
- ③ 임원의 임기는 실 경과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 대의원총회일로부터 기산하여 후임 임원을 선출한 대의원총회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4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회장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회장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같다.
 - 2. 1차 투표에서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3. 제2호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재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4. 제1차 투표결과 1위, 2위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1위, 2위 득표자 전원 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한다. 결선 투표는 제3호에 따른다.
 - 5.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어만

당선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체육회가 직선제 등 선출방식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협회와 시·도 골프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회장이 권위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제17조 제2항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거나, 60일 이내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2.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60일 이내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3. 위 제1호, 제2호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새로 선임된 회장의 임기는 모두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⑥ 회장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대의원 5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2.24>
- ⑦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회장 선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임원 구성) ①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회장은 제12조 제2호에서 정한 27인 이내의 이사 범위 내에서 1회(선임권한 위임의 경우 당해 집행부 제1차 이사회까지로 한다)에 한하여 추천권한을 행사한다.

- ② 임원 구성은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개정 2015.2.24>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본 협회 선수강화위원회에서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출신자가 재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공모를 통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는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여성 임원이 재직 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상임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상임이사의 수, 기능 등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로 정하고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개정, 사업계획, 예산결산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 ④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하되, 대의원 중에서 1인,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감사에 선임될 수 없다.
-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대의원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대의원(회장선출 총회에 참석한 대리인 포함)은 임원에 선임될 수 있으나, 재적이사(회장, 부회장 포함)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동일 시·도 골프협회 및 전국규모 연맹체의 회장 또는 부회장은 1인을 초과하여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 ⑦ 임원은 본 협회의 다른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⑧ 임원의 취임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 사항이나 관련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⑨ 제17조 제2항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체육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⑩ 임원은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를 선임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본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본 협회의 회장이 될 수 없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체육회 또는 본 협회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체육회 또는 본 협회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체육회 또는 본 협회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이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 ③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경기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⑤ 임원이 제1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외국 국적의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 감사는 본 협회의 회계와 업무 집행을 감사한다.

⑤ 본 협회의 임원이 동 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위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본 협회의 임원이 본 협회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위가 정지된다.

⑦ 시도체육회 및 시도 골프협회의 임원 또는 해당지역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본 협회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단체에서 직위가 정지되었을 경우 본 협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18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동일인이 다른 종목 경기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동일인이 다른 종목 경기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현재 소속 경기단체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선임임원 중 회계전문가로서 감사로 선임된 자는 다른 종목 경기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 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본 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안건으로서 통지된 경우, 그 시점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임원 사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5.2.24>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 1. 제15조 8항에 따라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 2. 제16조에 해당하는 때
- 3. 시도 골프협회 및 전국규모 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제20조(체육회의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협회 임원에 대해 구체적 징계수위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협회는 체육회의 징계요구에 따라야 한다.

- 1. 임원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 종목의 시설운영과 사업운영에 관여하거나, 본 협회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 2. 친족간 업무위탁 및 도급에 관여하여 본 협회에 손해를 입힌 자
- 3. 공금횡령, 편파 판정, 승부조작,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
- 4. 본 협회의 규정을 위반한 자
- 5. 제58조 제3항에 따라 체육회의 징계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② 징계에 관한 사항은 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21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인 및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1. 명예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회원 총회포함)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 2.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회장 및 고문에 위촉될 수 없고, 재임 중 이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③ 명예회장 및 고문에게는 급여, 수당 및 기타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2.24>

제4장 회원 총회

제22조(회원총회 구성) 회원총회는 본 협회의 제23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회원총회 대의원의 선출방법) ① 각 회원 골프장은 골프장 임직원 또는 회원 중 1명을 해당 회원골프장을 대표할 대표자로 지정하여 서면으로 본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지정된 대표자가 직위를 상실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원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골프장은 지체 없이 다른 대표자를 지정하여 본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 시도 골프협회 및 각급 전국규모 연맹체의 회장은 해당 협회 및 연맹체

를 대표하여 회원총회에 참석한다.

③ 시도 골프협회의 장 및 전국규모 연맹체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회원총회에만 미친다.

④ 미성년자는 회원을 대표하는 자가 될 수 없다.

⑤ 시도 골프협회의 장 및 전국규모 연맹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회원총회 5일 전에 본 협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회원총회의 기능) ① 회원총회는 제23조에서 정한 각 회원의 대표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이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② 회원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대의원총회 골프장 대표 대의원 선임에 관한 사항(시도협회 및 연맹과 동일 대의원의 수)
2. 협회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체에 관한 사항
4. 골프장 회원(해외지부 포함)의 제명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정관 상 회원총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5조(경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경기 총회는 의안이 있을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의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요구를 한 이어나 회원이 본 협회장에게 요청한 회원총회 소집 요청서를 첨부하고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회원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및 재적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구체적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5.2.24>

⑤ 회원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⑥ 회원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회원 전원

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의장) ① 회원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제25조 제3항에 따라 이어나 회원이 소집한 총회의 경우에는 출석대의원의 의결로 의장을 선출한다.

③ 회장 또는 부회장이 의장이 되었을 때에는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임시의장이 선출된 경우에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갖는다.

제27조(의결정족수) ① 회원총회는 본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도 출석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회원 수에는 포함되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출석회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타 회원에게 위임하여 권한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 총회 때마다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회 의결은 서면결의로 할 수 없다.

제28조(회원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9조(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회원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30조(의사규정) 회원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원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대의원 총회

제31조(대의원총회 구성) 총회는 제32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2조(대의원총회 대의원의 선출방법) ① 골프장 대의원은 시도 골프협회 및 전국규모 연맹체의 재적대의원 수와 동수 대의원을 회장이 추천하고, 회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원총회에서 선출된 골프장 대의원이 직위를 상실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교체 대의원을 추천하여 다음 회원 총회까지 교체 대의원이 골프장 대의원으로 활동하도록 한다. 또한 대의원총회 골프장 대의원사가 임기 중 회원사 직위를 상실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회원골프장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③ 각 시도 골프협회 및 각급 전국규모 연맹체의 회장은 해당 협회 및 연맹체를 대표하여 대의원총회에 참석한다.

④ 시도 골프협회의 장 및 전국규모 연맹체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대의원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대의원총회에만 미친다.

⑤ 골프장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⑥ 미성년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⑦ 시도 골프협회의 장 및 전국규모 연맹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 5일 전에 본 협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대의원총회의 기능) ① 대의원총회는 제32조 각 항의 대의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이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원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산하 단체의 조정 및 통할
5. 시도 골프협회 및 전국규모 연맹체의 설치 및 제명
6. 그 밖의 정관 상 대의원총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34조(경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경기 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체적 안전을 명시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구체적 안전을 명시한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의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요구를 한 이사나 대의원이 본 협회장에게 요청한 대의원총회 소집 요청서를 첨부하고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대의원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및 재적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구체적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5.2.24>

⑤ 대의원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회장을 선출하는 대의원총회는 후보자를 확정 후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대의원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35조(의장) ① 대의원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제34조 제3항에 따라 이사나 대의원이 소집한 대의원총회의 경우에는 출석 대의원의 의결로 의장을 선출한다.

③ 회장 또는 부회장이 의장이 되었을 때에는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임시 의장이 선출된 경우에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갖는다.

제36조(의결정족수) ① 대의원총회는 본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출석 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대의원총회 의결은 서면결의로 할 수 없다.

제37조(대의원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8조(임원의 불신임) ① 대의원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③ 해임 안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2.24>

④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39조(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40조(의사규정) 대의원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이 사 회

제41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2. 대의원총회(회원총회 포함)에서 위임받은 사항
- 3.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4. 대의원총회(회원총회 포함)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 5.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7. 상임 이사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8. 그 밖의 중요 사항

제42조(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3일 전까지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43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제4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는 소집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5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써 이사회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과반수 이사가 정식으로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장 전국 규모의 연맹체

제46조(설치 및 사업) ① 본 협회는 당해 대의원총회의 승인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국규모 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국규모 연맹체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

협회의 이사회 의결로 별도 규정을 정한 후 체육회에 제출한다.

③ 본 협회는 전국규모 연맹체에 전국규모의 선수권대회를 제외한 소관범위내의 경기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제47조(관리단체 지정) ① 본 협회는 전국규모 연맹체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골프인의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본 협회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전국규모 연맹체의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1. 본 협회 정관 등 제 규정의 중대한 위반
- 2. 본 협회 지시사항의 중대한 위반
- 3. 60일 이상 장기간 당해 연맹체장의 결위 또는 사고
- 4. 본 협회와 관련한 각종 분쟁
- 5.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수행 불가

③ 관리단체 지정 즉시 해당 단체 임원은 당연 해임된다.

④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 별도의 관리단체운영규정에 따른다.

제8장 시도 지부

제48조(지부) ① 본 협회는 당해 대의원총회의 승인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에 지부(이하 “시·도 골프협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시·도 골프협회는 본 협회의 지부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시·도 체육회에 가맹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본 협회는 해외지부(재외한인경기단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9조(지위 및 명칭) ① 시·도 골프협회는 본 협회의 시·도 지부로 본 협회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각 시·도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갖는다.

② 시·도 골프협회는 시·도 체육회에 가맹할 수 있으며, 그 사무소를 시·도 체육회 소재지에 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도 골프협회는 각 시·군·구에 지부를 둔다.

제50조(임원인준) ① 시·도 골프협회의 임원은 시·도 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시·도 체육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임원인준을 사무처장이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규정 승인) ① 시·도 골프협회 규약은 당해 시·도 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정에 의거하되 본 협회의 정관에 부합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시·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규정 개정 시마다 본 협회를 경유하여 시·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회운영 규정 등 전문규정은 본 협회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52조(이의신청 및 감사) ① 시도 골프협회는 본 협회에 시도 체육회의 규약승인 및 임원 인준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본 협회는 시정사항이 있으면 2주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시도 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도 체육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본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 골프협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④ 본 협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해태가 있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 직접 징계 또는 시도경기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직원에 대해 시도경기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53조(시도 골프협회의 총회) ① 시도 골프협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시도 골프협회가 시·군·구 지부로 승인한 시·군·구 골프협회의 장
2. 시도 골프협회의 등록팀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한 단체인(학생부와 일반부로 구분하고, 학생부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를 일괄대표하며, 이하 같다)별 1인

② 시도 골프협회는 제1항 제1 내지 제2호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다만, 단체군별 대의원은 대리인을 지명할 수 없고 당사자만이 총회에 참석한다.

③ 시도 골프협회가 제2항에 의한 총회 구성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 전체회의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④ 시도 골프협회의 장은 등록팀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단체군별로 각각 소집하여 제1항 제2호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⑤ 시도 골프협회의 장은 등록팀의 장 또는 그 대리인 회의를 단체군별로 각각 소집하여 제3항의 대의원을 선출하며, 단체군별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당해 시도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시도 골프협회의 장이 제4항 내지 제5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팀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시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54조(단체군 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① 시도 체육회는 제53조 5항에 따른 단체군별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② 단체군별 대의원은 당해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제55조(총회구성 불가시 대체 기관) ① 시도 골프협회는 시·군·구 지부의 수 및 단체군별 등록팀 수가 적어 총회 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총회 기능을 대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군·구 지부의 장 1인 이상 및 등록팀의 장 또는 그 대리인 1인 이상을 이사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6조(개최기한 및 규정준용) ① 시도골프협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정기총회를 회장이 소집한다.

② 시도 골프협회 총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 정관 및 본 정관 중 본 협회 대의원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각종 위원회

제57조(설치) ① 본 협회의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경기위원회, 선수강화위원회(선수자격심의위원회), 상벌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의 각종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로써 설치한다.

② 각종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2인, 위원 약간 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당해분야에 전문가로 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각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⑥ 회장과 친족관계인자(민법 제777조)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⑦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⑧ 등록선수는 선수강화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⑨ 제1항의 각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⑩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가급적 이사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10장 대한체육회와의 관계

제58조(체육회와의 권리·의무) ① 본 협회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체육회의 대의원총회에의 파견권
2. 체육회에 대한 건의 및 소청권
3. 체육회의 사업에 대한 참가권
4. 체육회의 사업에 대한 주최·주관 및 후원권
5.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지원 요청권

② 본 협회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체육회의 정관·제규정 및 지시사항 준수 의무

- 2. 국제경기연맹의 제반규정 준수의무
 - 3. 사업계획서, 예산서, 사업보고서, 결산서의 체육회 제출 의무
 - ③ 본 협회가 의무를 위반하여 체육회 가맹단체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체육회 정관 제12조에 의거 제명될 수 있으며, 의무사항을 해태 또는 불이행할 경우 예산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본 협회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직무 관련 비리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제59조(평가 및 지위변경)** 체육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평가에 자체 피평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성실히 임해야 하며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한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1장 사무국

- 제60조(사무국)** ① 본 협회는 사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포함한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④ 본 협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 제61조(사무국 규정)** ① 사무국 직원의 신분보장을 포함한 사무국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5.2.24>
- ② 본 협회의 모든 기록물은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 사무관리규정 등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5.2.24>
- 제62조(직원의 신분보장)** <삭제 2015.2.24-제61조 1항으로 이동>

제12장 자산 및 회계

- 제62조(재원)** 본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1. 과실금
 - 2. 회비
 - 가. 제9조에 의한 회비
 - 나.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참가 회비
 - 3. 보조금
 - 4. 사업 수입금
 - 5. 기부금 및 찬조금
 - 6. 기타 수입금
- 제63조(재산의 구분)** ① 본 협회 재산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 1. 부동산 (별첨 1과 같다)
 - 2. 기부금품은 그 기부자의 지정에 따른다.
 -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결의한 재산
-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64조(재산관리)** ① 본 협회의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본 협회가 업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제외)에 대하여도 같다.
- ② 본 협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 협회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 제65조(경비의 조달방법)** 본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보조금, 기부금(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 제66조(기금의 운영)** ① 본 협회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회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제1항의 기금은 특별회계로 하고 이사회에서 정한 기금관리규정에 의거 관리한다.
- 제67조(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68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본 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결산대의원 총회 개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④ 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한 업무계획의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동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 결의로써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9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0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 제71조(임원의 보수)** ① 상근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②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72조(회계처리)** 본 협회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73조(올림픽 등에 대한 권리 보호)** 본 협회는 체육회 정관 제43조에 의한 체육회

의 올림픽 등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가맹단체로서 동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제반 노력과 협조를 다한다.

제13장 보 칙

제74조(해산) ① 본 협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② 본 협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또는 당해 경기단체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한다.

제75조(정관개정) 본 협회의 정관을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회원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6조(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7조(사업계획, 예산, 결산의 보고) ① 본 협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회장이 이를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작성하여 재산목록, 사업보고서 및 감사 보고서를 첨부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8조(정관의 해석) 본 정관은 체육회에 보고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수정이 있을 때마다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9조(규정 제.개정) ① 본 정관은 체육회 가맹경기단체규정을 준용하여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본 협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사항은 이사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정관효력) 이 정관의 효력은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얻어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부 칙 <2012.3.16.>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6.16 >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날(2014.6.16.)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본 정관 제15조 제2항 내지 제6항, 제16조 제1항, 제2항, 제9호, 제3항, 제4항 및 제57조의 개정 규정에 대하여는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② 이 정관 규정 제13조의 임원의 임기 제한 횟수 산정에는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 임원의 임기를 포함한다. 다만, 이 개정 정관 시행 당시 중임인 임원은 2016년도 대의원 총회(감사의 경우 2016년도 대의원 총회)까지 임원으로 활동한다.

③ 본 정관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32조 제1항에 의한 2014년도 골프장대 의원 선출은 2014년 임시대의원총회(4.2.)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2015.2.24 >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날(2015.2.24.)로부터 시행한다.

(별첨)

기본 재산 목록

1. 기본 재산 총괄표

재산명		수량	평가액	주소지
부동산	토지	26.91m ² (8.14평)	22,529,510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번지 2
	건물	291.69m ² (88.23평)	134,103,054원	
합계			156,632,564원	

재산명	내역	금액	비고
예금	경기력향상적립금	2,719,890,770원	
	주니어육성기금적립금	2,726,824,429원	
합계		5,446,715,199원	

2. 기본 재산 세부 목록표

재산명	소재지	번지	지목	지적	평가액
토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2	대지	26.91m ² (8.14평)	22,529,510원
건물		지상	사무실	291.69m ² (88.23평)	134,103,054원
합계					156,632,564원

재산명	금액	비고
예금	5,446,715,199원	
합계	5,446,715,199원	